

고 발 장

고 발 인 1. 금융정의연대(대표 고발인)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24길 대경오피스텔 2층 211호
대표자 김득의(02-786-7793)

2. 참여연대(공동 고발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안진걸(02-723-5052)

피고발인 정 찬 우(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현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한국거래소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강요죄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피고발인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당사자 관계

고발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시민사회단체입니다.

피고발인 정찬우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은행 인사개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013. 03 ~ 2016. 01)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고, 2016. 10.경부터 현재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와 기소 내용을 보면, 피고발인 정찬우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의 기재 사실과 최근 확인된 사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순실(개명 후 : 최서원, 이하 '최순실'이라 합니다)은 2015. 8.경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정유라의 승마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에 최순실 본인 및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법인장(이하 '지점장'이라고 합니다)인 고발 외 이상화를 알게 되었고, 고발 외 이상화(전 하나은행 글로벌영업 2본부장)로부터 예금 인출·송금 등 예금관리 업무, 대출 업무, 독일 소재 부동산의 물색 및 소개, 코어스포츠 상호 변경 등 최순실의 자산관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순실은 2015. 11. 초순경 고발 외 이상화로부터 유럽에 하나은행 총괄 법인이 설치될 예정인데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한 후 이상화를 유럽 총괄법인의 법인장으로 임명되게 하여 외환 거래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순실은 2015. 11. 초순경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하고 이상화를 유럽 총괄 법인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최순실의 요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1. 6. 안중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그와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 9. 13.자 안중범 전 수석의 수첩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중범에게 '이상화'라는 이름과 '001-49-173-851'로 시작하는 이상화의 국제 전화번호까지 불러 주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최순실은 적어도 2015. 9. 이후 박 전대통령을 통해 이상화를 매개로 한 편의를 요청해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 제2호증 「[단독] "전화번호까지 건네며"..박 전 대통령, 최순실 뇌물 직접 개입 정황」 MBN 언론기사(2017. 6. 12.) 참조).

안중범은 2015. 11. 6.에 받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피고발인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동일한 지시를 하였고, 피고발인 정찬우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고발 외 이상화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후 최순실은 2015. 11. 하순경 고발 외 이상화를 국내에서 하나은행의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되도록 하여 계속적으로 독일로의 해외송금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무렵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발 외 이상화가 귀국하

면 하나은행의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2015. 11. 하순경 안종범에게 ‘독일에서 귀국하는 이상화를 하나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 발령이 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피고발인 정찬우 부위원장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정찬우는 김정태 회장에게 전화하여 “안종범 수석이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라고 한다”고 말하였는데, 김정태 회장으로부터 12월말 정기인사 때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안종범 수석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요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발 외 이상화에 대한 인사사항을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하면, 안종범 경제수석은 그 내용을 피고발인 정찬우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발인 정찬우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하나은행 김정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 정찬우는 박근혜 등의 인사 관련 지시가 위법한 것이고, 자신의 행위가 그 위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임을 잘 알고 행위에 나아간 바, 박근혜 등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범죄사실

피고발인의 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 제89쪽 하단 ‘VII. KEB하나은행 임직원 인사 개입’ 항목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 제1호중 박근혜 구속영장청구서]

최서원은 2015. 8.경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정유라의 승마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에 최서원 본인 및 코어스포츠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지점장인 이상화를 알게 되었고, 이후 이상화로부터 예금 인출·송금 등 예금관리 업무, 대출 업무, 독일 소재 부동산의 물색 및 소개, 코어스포츠 상호 변경 등 피고인의 자산관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서원은 2015. 11. 초순경 이상화로부터 유럽에 하나은행 총괄법인이 설치될 예정인데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한 후 이상화를 유럽 총괄법인의 법인장으로 임명되게 하여 외환 거래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최서원은 2015. 11. 초순경 피의자에게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하고 이상화를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최서원의 요청을 받은 피의자는 2015. 11. 6. 안종범에게 그와 같이 지시하였으며, 안종범은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동일한 지시를 하고, 정찬우 부위원장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이상화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하나은행의 유럽 총괄법인 설치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이상화가 유럽 법인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최서원은 2015. 11. 하순경 이상화를 국내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되도록 하여 계속적으로 독일로의 해외송금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의자에게 이상화가 귀국하면 하나은행의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의자는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2015. 11. 하순경 안종범에게 ‘독일에서 귀국하는 이상화를 하나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 발령이 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정찬우 부위원장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지시하였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김정태 회장에게 전화하여 “안종범 수석이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라고 한다”고 말하였는데, 김정태 회장으로부터 12월말 정기인사 때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안종범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김정태 회장은 2016. 1. 7. 하나은행

정기인사에서 이상화를 본부장이 아닌 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장에 임명하였다.

그 후 최서원은 다시 피의자에게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승진 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의자는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2016. 1. 21. 안종범에게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재차 지시하였으며, 안종범은 같은 날 김정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상화를 바로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키랬지 언제 센터장을 했다가 나중에 본부장 승진을 시키라고 했습니까? 당장 승진시키세요. 무조건 빨리 하세요.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 갑니까”라고 겁을 주면서 화를 냈고, 김정태 회장은 안종범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2016. 1. 23.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유재봉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을 지시하여 글로벌 영업 그룹장 밑에 1본부장과 2본부장을 신설하여 본부장급 자리 2개를 새로 만든 후 2016. 2. 1. 이상화를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최서원, 안종범, 정찬우와 공모하여,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등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김정태 회장으로 하여금 이상화를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위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면, 피고발인 정찬우는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등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으로 하여금 하나은행 이상화를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4. 피고발인의 성립범죄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인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2) 피고발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하나은행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승진요소 근속년수를 충족한 5급A 행원

이상¹⁾의 직원은 종합인사평정 결과에 따라 승진임용이 가능하고, 동 규정 제22조 제2항은 종합인사평정은 직원성과평가, 경력평정, 연수평정, 가감평정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은행 인사실무담당자는 위 집행기준에 따라 고발 외 이상화를 평가하여 승진임용여부를 결정할 고유의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발 외 이상화에 대한 승진특혜는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피고발인 정찬우는 박근혜, 안종범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등 직권을 남용하여 하나은행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나. 업무방해죄, 강요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때 ‘업무’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1)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 따르면, 국외지점장과 부장은 4급A 이상인 직원을 보임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상화가 5급B 이상의 행원임은 명백합니다.

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 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위와 같은 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회사의 인사는 계속성을 갖는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발인이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 김정태에게 하나은행 인사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반하여 특정사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압박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사용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피고발인 정찬우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등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은행의 인사에 2차례(하나은행 유럽 법인장, 하나은행 해외업무 총괄 본부장)나 개입하여 압박한 결과 하나은행 인사담당자가 의무 없는 일인 고발의 이상화를 승진시키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강요죄가 성립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5. 결론

따라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정찬우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추가 수사 요청 사항

금융위원회는 2015년 11월 12일 관련 금융기관 홍보부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2편의 캠페인 광고(핀테크 편, 금융개혁 편)를 제작하기로 협의하고 관련 비용 14억 원을 각 기관별로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 영상 2편은 광고홍보 대행사인 B사가 제작해 지상파 방송사 3사를 통해 지난 11월과 12월 방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사는 금융위의 기존 홍보관련 업무 일부를 담당해 온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사전계획에 없던 ‘클라우드펀딩 캠페인’ 광고를 추가로 제작하기로 하면서 기존 B사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고발 외 ‘차은택’ 단장이 대표로 있던 ‘아프리카 픽처스’에 제작을 맡겼습니다(증 제3호증 국회의원 채이배 보도자료(2016. 10. 10.자) 참조).

즉 금융위원회가 예정에도 없던 광고를 갑자기 제작하기로 하고,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차은택에게 광고제작을 맡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최순실, 안중범 등의 추가 광고 수주 관련된 요구가 금융위원회에 전달되었는지, 그 요구를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담당자가 피고발인 정찬우인지 등에 대하여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 광고의 대금을 한국거래소가 대납하였다는 점,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피고발인 정찬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다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거래소가 영업을 영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해 광범위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피고발인 정찬우가 이후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 광고가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 정찬우가 모종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 외 차은택을 위한 추가적 광고 발주와 관련된 피고발인의 범죄혐의 유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그 혐의 유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합니다.

7. 증거자료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없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 관련 민사소송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거서류

1. 증 제1호증 박근혜 구속영장청구서
1. 증 제2호증 「[단독] "전화번호까지 건네며"..박 전 대통령, 최순실 뇌물 직

